

##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(Guide for International Students Subscribing to National Health Insurance)

1. 국내 체류 유학생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2021.3.1로 당연가입됩니다. 유학생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를 합니다.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학생들은 3월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가입처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Tel. 1577-1000)

체류자격 구분	적용시기
유학(D-2)	최초입국 시 → 외국인등록일
	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→ 재입국일
재외국민·재외동포 유학생	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(재학증명서 제출)

※ 외국인등록증 수령 이전에는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[외국인등록사실증명]을 발급받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2. 보험료 및 납부 방법

1) 2021년 유학생 보험료: 43,490원/월 [매년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음.]

2) 납부방법: 매월 25일까지 발송된 보험 고지서를 납입하면 됩니다.

(자동이체(계좌·카드), 공단지점방문, 은행통해 납입 가능)

-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1~15일경 학생 외국인등록 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 발송→ 우편을 받지 못할 경우, 보험료를 체납할 수 있으므로 3월 초에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신청방법: 전화문의(1577-1000)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), 모바일앱(The건강보험, 모바일지로)납부

※ 주의: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, 추후 체납액을 완납하더라도,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. 건강보험 혜택

1) (내국인과 동일한 혜택)치과·한의원 진료, 건강검진, 임신·출산관련 진료비(국민행복카드),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.

※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에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등 건강보험 미적용 사항은 제외 (예)미용목적의 수술 등

※ (본인부담금)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

- 외래진료: 건강보험 적용 총비용의 30~60%(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, 입원진료는 20%)

※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를 기준을 2년(비사무직 1년)마다 1회이상 실시

..... 2021년도는 흡수연도 출생자


4.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
- 1)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원, 의원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.
  - 2) [비자연장 등 제한]법무부에서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
→ (예외) 건강보험료 50만원 미만, 기타징수금 10만원미만 체납자의 경우는 비자연장 제한 없음.
  - 3)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부동산·자동차·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.  
→ 체납금은 분할납부 가능하며, 체납보험료 완납 시 보험 이용 가능.
- ※ 주의: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, 추후 체납액을 완납 하더라도, 소급하여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

- 1)신청대상 : 외국의 법령, 외국보험,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.
  - 2)제출서류: 가입제외신청서, 보험증서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- ① 외국의 법령으로 가입제외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
      - 프랑스: 가입제외신청서(국적 확인 후 가입제외)
      - 일본: 본국(일본) 건강보험증, 가입제외신청서
      - 미국: 유니폼카드 또는 블루크로스블루실드 보험카드, 가입제외신청서
    - ② 외국의 보험,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가입제외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보험가입증서, 보험약관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.
    - ③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.(아포스티유(Apostille)인증 및 번역공증은 불필요합니다.)
- ※ 가입예외를 원하는 경우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(Tel. 1577-1000)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6. 외국인민원센터 운영안내(서울 및 수도권)

센터명	관할지역	센터안내
서울센터	서울전역	
안산센터	안산,시흥,군포	
수원센터	수원,용인,화성,오산,성남	
인천센터	인천,부천,김포,광명	
의정부센터	의정부,남양주,가평,포천,동두천,연천,양주,구리,고양,파주	

7. 문의/ Inquiry / 상담 Consultation

<b>TEL. 1577-1000</b>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- Dial 7 for information on foreign languages	<b>Tel. 033-811-2000</b> 외국어(영어,중국어,베트남어,우즈베크어)상담 가능 -Service in foreign languages(English, Chinese, Vietnamese and available)
※ 상담시간: 평일 오전9시~오후6시/ ※ Service Hours: 9:00am~6:00pm on weekdays	

8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[국민건강보험공단 배부 자료]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